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회원관리 및 경기 규정

제정 2017.01.14.
개정 2018.01.20.
개정 2019.01.05.
개정 2019.02.09.
개정 2019.09.01.
개정 2020.01.12.
개정 2020.02.03.
개정 2021.04.24.
개정 2022.02.1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이하 본회) 회원 관리 및 경기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회에 등록된 회원(동호회)의 회원관리 업무 및 본회에서 주최, 주관 하는 모든 대회와 소속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본회와 소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유권 해석과 대한탁구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의무)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은 본회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2장 회원(동호회) 관리

제5조 (회원 등록) ① 회원은 동호회에서 매년 초 일괄 등록하며, 연중 발생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본회에 최초 등록하는 신규 회원은 제1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력에 합당한 부수에 등록해야 한다.

1. 선수부 : 남자로서 고등학교 1학년 이상 선수생활자 <개정 2018.1.20.>
2. 1부 : 여자로서 고등학교 이상 선수 생활자 및 1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 <개정 2021.4.24.>
3. 2부 : 2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

4. 3부 : 남자로서 중학교 1학년 이상 선수 생활자 및 3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
(단, 선수생활자 중 실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 24.>
5. 4~8부 : 4~8부 수준의 실력 <개정 2021.4. 24.>
6. 9부 : 여자 중 초심자 <개정 2021.4. 24.>
- ③ 본회에 최초 등록한 신규 회원은 시합 공고 1주일 전에 등록되어야 당해 시합에 출전할 수 있다.
- ④ 본회에 등록되었던 회원이 재 등록 시에는 기존의 부수로 등록한다.
- ⑤ 본회는 제6조에 의거 회원의 자격이 의심될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동호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자격) 본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민
2.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공서 및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7조 (이적) ① 등록된 회원이 동호회 소속을 변경할 때는 이적 동호회에서 이적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이적을 완료한다.

② 회원의 이적을 원 소속 동호회에서 다음의 사유로 반대할 경우 명확한 반대 사유를 적시하여 본회에 제출할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이적을 제한한다.

1. 회비 미납
2. 원 소속 동호회 규정상 의무 위반
3. 기타

③ 이적한 회원은 이적 후 12개월간 타 동호회로 재이적 할 수 없다.

제8조(동호회 등록) ① 동호회는 매년 초 일괄 등록하며, 년중 발생하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 <2019. 9. 1. 개정>

② 본회가 지정한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존 등록된 동호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동호회(해산된 동호회 포함)는 본회 대의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이 때 동호회의 최소 구성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2019. 9. 1. 개정>

④ 동호회는 본회 등록 시 등록 구비 서류에 등록사항을 정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 사항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본회 및 본회 산하단체의 당해 연도 공식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2020. 1. 12. 개정>

제9조(이중 등록) ①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타 시, 도 포함 하나의 동호회에만 등록해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협회와 동호인간(초등학생인 경우 대한탁구협회와 동호회간) 이중등록을 허용한다. <개정 2019.2.9.>

제10조(등록비) ① 본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회원은 등록비를 본회가 지정하는 통장으

로 입금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된다.

1. 동호회 등록비 : 200,000원/년

2. 회원 등록비 : 10,000원/년

② 수시로 등록하는 회원 및 이적회원에 대한 등록비도 1항과 같다.

③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70세가 넘는 회원의 등록비는 면제한다.

제11조(탈퇴, 합병 및 해산) ① 회원 탈퇴 및 동호회 합병, 해산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회원 탈퇴 : 탈퇴 서류를 구비하여 동호회 승인을 얻어 본회 제출

2. 동호회 해산 : 해산 결의를 한 동호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해산 신청서 제출

3. 동호회 합병 : 2개 이상의 동호회가 합병할 경우 각각의 동호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합병 신청서 제출

② 회원 탈퇴 및 동호회 합병, 해산 시 기존 납부한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경기 운영

제12조(개인전 부수) ① 개인전 부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4. 24.>

1. 일반부(1~9부) : 만19세 이상(초등,중,고등학생 제외)으로 연령제한 없음

2. 학생부(1~9부)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으로 동호인으로 등록된 학생.

3. 선수부 : 고등학교 1학년 이상 선수로 활동한 자 중 당해 연도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기준 만 50세 미만

② 제1항 제3호에 의한 선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여자인 경우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1.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자

2. 학적부에 등록된 자

3. 본회에서 선수로 인정한 자

제13조(단체전 부수) ① 단체전 부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4. 24.>

1. 백두부 : 개인전 선수, 일반 1, 2, 3, 4부에 소속된 자로 구성된 팀

2. 한라부 : 개인전 일반 5, 6부에 소속된 자로 구성된 팀

3. 금강부 : 개인전 일반 7, 8부에 소속된 자로 구성된 팀

4. 오름부 : 개인전 일반 9부에 소속된 자로 구성된 팀

② 제1항 제1호 백두부에서 선수로 구분되는 자는 숫자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1.4. 24.>

③ 단체전은 소속된 부수에 출전해야 하나, 팀 구성이 어려울 경우 하위부수에서 상위부수로 출전할 수 있다. 단, 출전엔트리 과반수를 초과하여 출전할 수 없으며, 하나의 팀으로 출전해야 한다. 이 경우 핸디캡은 상향출전한 부수의 개인 최소 부수로 한다.

④ 단체전은 상위부수에서 하위부수로 출전은 불가하다. 단, 동호회 내 백두부에 속한 회원이 3

명 미만일 경우 1명에 한하여 한라부에 출전할 수 있으나, 2명이 각각 한라부 2팀에 출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핸디캡은 제16조 제2항에 따른다.

제14조(승급) ① 본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포인트를 획득했을 경우 상위부수로 승급하며 차기 대회부터 적용한다. <2021. 4. 24. 개정>

1. 개인전 대회 1, 2, 3, 4부는 우승 포인트 5점, 준우승 포인트 4점으로 한다.
2. 개인전 대회 5, 6, 7, 8, 9부는 우승 포인트 5점, 준우승 포인트 4점, 4강 3점, 8강 1점으로 한다.
3. 단체전 8개 팀 이상이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한 팀 전원에게 포인트 1점을 부여한다.(단, 단체전 포인트 적용기간은 2년으로, 월 기준 2년 후 소멸된다.)
4. 개인전 대회 2부는 누적 포인트 15점 이상 달성 시 1부로 승급한다.
5. 개인전 대회 3부는 누적 포인트 10점 이상 달성 시 2부로 승급한다.
6. 개인전 대회 4부는 누적 포인트 8점 이상 달성 시 3부로 승급한다.
7. 개인전 대회 5부는 누적 포인트 7점 이상 달성 시 4부로 승급한다.
8. 개인전 대회 6부는 누적 포인트 4점 이상 달성 시 5부로 승급한다.
9. 개인전 대회 7부는 누적 포인트 4점 이상 달성 시 6부로 승급한다.
10. 개인전 대회 8부는 누적 포인트 3점 이상 달성 시 7부로 승급한다.
11. 개인전 대회 9부는 누적 포인트 4점 이상 달성 시 8부로 승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에 처음 등록한 자가 첫 개인전 대회(부수내 50명 이상 출전)에서 8강에 도달했을 경우, 개인전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승급하며, 당일 대회 단체전에서는 제16조 제2항에 의거 한 핸디캡을 적용하여 경기한다. <2022. 2. 19. 개정>

③부수내 50명 이하가 출전한 개인전 대회에서 본회에 처음 등록한 자의 경기는 4강까지만 인정하고 경기를 중단하다.(입상은 제외) <2022. 2. 19. 개정>

제15조(강급) ① 다음의 경우 각 연령대별 1회에 한해 하위부수로 강급한다.

1.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기준 만 50세, 60세 이상인 자가 동호회에서 연초 등록 시 강급 신청할 경우. (단, 70대 이상은 연초 등록 시 횡수 상관없이 2부수 내에서 하향 등록할 수 있다.) <2021. 4. 24. 개정>
2. 본회에 등록한 기존 회원의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소속 동호회장이 본회에 부수 조정을 신청하고 이사회에서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는 50대, 60대에 승급하거나 등록할 경우에는 당해 대수에서는 강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 2. 3.>

제16조(핸디캡) ① 개인 부수간 핸디캡은 다음과 같다.

1. 단식 : 개인 부수간 최초 핸디캡은 2점을 적용하며, 차 부수당 1점씩 추가한다. (단, 선수부와 1부간의 핸디캡은 3점을 적용한다.) <2021. 4. 24. 개정>
2. 복식 : 복식 구성원 부수를 합한 부수로 개인 부수간 핸디캡을 적용한 후 2로 나눈 점수를 한

디캡으로 하며 소수점 아래의 수는 절상한다. (예. (1+1)@(1+2)→2@3→2/2=1점, (선+1)@(1+1)→0@2→3/2=2)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체전에서 상위 부수의 자가 하위부수로 출전할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핸디캡에 1점을 더한 점수를 핸디캡으로 한다.

제4장 대회 운영

제17조(대회요강) 대회 주최, 주관 측은 경기종목, 방식, 참가기준, 대회기간, 참가 신청방법, 마감일 등 기타 대회 진행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명시하여 대회 요강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8조(참가신청) ① 대회 요강에 명시한 마감일 이후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본회에서 추가접수를 공지한 경우 추가로 공지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신청 마감후 명단 변경을 하는 경우 대회 개시일 7일 전 까지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방법은 Fax, e-mail로 접수한 것만 인정한다.

제19조(참가비) ① 참가 신청 동호회는 참가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참가비를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대회 개시일 15일 전까지 미입금시 참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금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0조(복장) ① 경기 복장은 짧은 소매의 셔츠, 짧은 바지나 스커트, 양말, 경기화 등이 해당된다. 경기 중에는 심판이사의 허락 없이 다른 의복 가령 긴바지 등의 옷을 입을 수 없다.

②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유니폼 뒷면 중앙에 소속명과 성명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인쇄 또는 다음 규격으로 필히 부착해야 하며 소속과 성명이 미 인쇄된 유니폼 착용 또는 규격에 맞는 명찰 미 부착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개정 2018.1.20.>

1. 소속과 성명은 한글 표기를 원칙(영문병기 가능)으로 한다.

2. 유니폼 뒷면 인쇄 및 등명찰 규격 : 가로 25cm, 세로 18cm

③ 경기 복장에 관한 모든 적법성과 허락 여부는 심판이사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제21조(순연) 사정으로 대회기간 내에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대회 주최, 주관 측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택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1.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는 방법

2. 공동으로 입상을 정하는 방법

3. 추후 기일을 정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는 방법

제22조(순위) ① 리그전에서 각 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할 때마다 2점의 점수를 얻고 졌을 때는 1점을 얻는다. 그리고 기권을 한 경우는 0점을 얻는다. 순위는 승점에 따라 결정한다.

② 리그전내에서 두 명(조, 팀)이상이 동일한 승점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 간의 경기 결

과로 순위를 결정한다. 당사자들 간의 승점, 게임 득실률, 점수 득실률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계산 과정에서 다른 선수(조, 팀)들은 동점인 상태에서 1명 이상이 순위가 정해진 경우에는 이들의 참가한 결과는 제22조 2항의 계산에서 제외시킨다.

④ 만약 제22조 2항의 결과로도 순위를 정할 수 없거나 게임, 점수등의 기록이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연장자(연장자가 있는 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2020. 1. 12. 개정>

제23조(기권) ① 리그전은 경기 일정에 따라 해당 리그전 마지막 경기가 마칠 때까지 참가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한다.

② 토너먼트는 진행자가 최종 기권처리 통보 후 5분까지 참가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한다.

③ 단체전은 1명 부족시 오더 작성 전 상대팀에게 통보하고 1번을 기권하여야 하고 2명이상 부족시 기권패 처리한다.

④ 단체전에서 양팀 모두 1번 기권인 경우에 서로 승패 결과가 같을 때는 게임득실, 점수득실 순으로 승패를 정하고 이로서도 결과를 정할 수 없을 때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⑤ 단체전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오더 순서대로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경기 순서에 선수 부재시 최종 통보후 5분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기권패 처리한다.

⑥ 단체전 오더 작성후 경기 시작시 참가선수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선수 부재시 최종 통보후 5분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실격패 처리한다.

⑦ 경기진행이 공지된 경기일정보다 빠른 경우 최종 기권처리는 경기일정 기준으로 5분후에 기권패 처리한다.

⑧ 단체전 경기중 오더 순서와 다른 선수가 경기를 시작한 경우 그 매치와 해당 선수의 본래 매치 모두 기권 처리한다. 경기 시작은 인플레이 상태를 의미하며 연습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24조(실격) ① 참가선수는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포함된 국가인정 자격증(예:운전면허증)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시 제출하지 못하면 실격패 처리한다.

② 핸디 경기시 해당자가 핸디를 적용하지 않고 경기를 한 경우 실격패 처리한다.

③ 단체전 경기시 부정선수가 1명이상 포함되었을 경우 팀 몰수패 처리한다. 또한 해당선수의 개인전 모든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④ 개인전에서 부정선수로 실격패 한 경우 해당 선수의 모든 개인전 경기는 몰수패 처리하고 진행하지 않은 단체전 경기는 해당자만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비신사적인 행동이나 고의적으로 대회 진행을 방해하고 스포츠맨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난 행동을 한 자(팀)에 대하여 몰수패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연) 경기 중 신체상의 문제나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 시간을 줄 수 있으며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권 처리 한다.

제26조(진행) ① 선수(팀)가 기권, 실격 또는 몰수패 처리된 경우 몰수패 선언까지 마쳐진 경기에 대한 상대방의 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입상후에 실격 또는 몰수패 처리된 경우 해당자(팀)의 입상은 무효로 하고 해당 등위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 그 외 기권, 실격, 몰수패의 처리문제는 소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이의제기) ①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소청은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경기 당사자 또는 팀의 대표자(감독)만이 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를 한 자(팀)와 이의제기 해당자는 이에 대한 증명자료나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대회 기간중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기는 계속 진행하고 양측은 1주 이내에 증빙자료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가 마친 후에 부정선수가 확인되면 해당 선수(팀)는 입상이 취소된다.

④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은 심판이사, 경기이사의 순으로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자들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은 소청위원회에서 한다.

제28조(소청위원회) ① 대회 주최, 주관 측은 매 대회마다 수석부회장, 여성부회장, 경기이사, 심판이사, 여성이사로 소청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청위원회는 대회 기간중 대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사항은 대회기간중 대회규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소청위원회는 대회 기간 중 발생한 몰수패, 부정선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9조(스포츠공정위원회) 대회기간중 발생한 사안중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소청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대회후 3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자(팀)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2020. 1. 12. 개정>

제30조(개정) 본회 경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본회 이사 3분의1이상의 요청에 의해 상정되어 본회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별도의 세칙이 필요한 경우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관례)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 또는 대한탁구협회 규정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32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